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정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54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신정호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임만균, 송명화, 우형찬, 정재웅,
권영희, 채유미, 김경우, 전석기,
이정인, 이경선, 강동길, 박순규,
추승우 의원 (13명)

1. 제안이유

-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·관리 목적을 정비하여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, 조명기구에 대한 색온도 조항을 신설하여 조명계획 수립시 사용자 안전과 야간환경,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, 조례에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에 공업활동을 추가함(안 제6조제4호)
- 나. 조명계획 수립시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함(안 제22조의2 신설)
- 다. 타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2조제2호, 안 제26조제2호 및 제3호)

3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”를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 중 “상업활동”을 “상업활동 및 공업활동”으로 한다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) 시장은 조명계획 수립시 사용자의 안전, 야간 환경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6조제1항제2호 중 “제13조제1항제3호”를 “제16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

제26조제1항제3호 중 “제16조”를 “제19조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광고조명"이란 「<u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.</p> <p>3. ~ 5. (생 략)</p> <p>제6조(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) ① 시장은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명환경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: <u>상업</u> 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"광고조명"이란 「<u>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.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: <u>상업</u> <u>활동 및 공업활동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
구역

② ~ ③ (생략)

<신설>

제26조(조명지원사업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개선·정비하는 자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「경관법」 제13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의 형성·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

3. 「경관법」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야간경관을 형성·정비하는 경우

② (생략)

--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2(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) 시장은 조명계획 수립시 사용자의 안전, 야간 환경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6조(조명지원사업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제16조제1항제3호

3. ----- 제19조-----

② (현행과 같음)